

공사 입찰 공고(긴급)

(전자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총공사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장지공영차고지 석면해체 및 지장물 철거공사	1,071,613,000	1,008,866,331	62,746,669

※ 공사비 구성 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99%, 석면해체 1%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862-1번지, 862-2번지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비 작업일수, 석면해체, 해체허가, 착공신고 등 제반업무 소요 기간 포함

라.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바. 전문공사, 신설공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07.21.(화) 10:00 ~ 07.27.(월)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07.21.(화) 10:00 ~ 07.23.(목) 18:00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07.24.(금) 10:00 ~ 07.27.(월) 10:00
개찰일시	2026.07.27.(월) 11: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자 이거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자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불허)

- 공동도급의 유형 중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e-고객센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검색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승인처리 메뉴일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도급만 해당)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제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 다. 기타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 낙찰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공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 순공사원가 : **977,282,071원**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를 포함한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에 따른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70 - 4 \times \left \left(\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	---

-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16,349,694원**
-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니 이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977,282,071원**
-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 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시행 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합니다.
- 다. 시공경험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대상은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이행 업종별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세(원)	업종평가 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	1,063,449,018	1,001,444,529	62,004,489	100%
석면해체제거업	8,163,982	7,421,802	742,180	미평가

라.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유동비율	139.21%	153.55%
부채비율	104.94%	57.45%

- 마.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석면해체제거업 모두 평가합니다.(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 바.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11절 3.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0.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입찰공고문에 전자파일로 첨부된 현장설명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가설시설물 설계도면 을 통해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가. 관련근거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공 사 명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장지공영차고지 석면해체 및 지장물 철거공사	10,692,522	14,127,810	1,404,996	11,960,588	6,840,834	-	71,322,944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품질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교통 및 시민안전 유도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금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고려하여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 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 - 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9)

14.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2387)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 02-2133-8106)

15.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6.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할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하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20. 기타사항

-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설계서를 사전 열람하는 등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검토하고 관계법령 및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비 작성 및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 마.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023호, 2025. 1.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알림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 환경사업부 (02-6940-8779)
-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부 (02-6940-877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 (02-3410-719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u.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7. 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